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하여야 하는 운전경력조회 회신서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전경력조회 회신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 서식

2.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조회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범죄경력자료

연번	작성일자 (작성관서)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경찰서)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 ③ (생 략)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영 제14조의8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u>별지 제1호의6서식</u> 에 따른다.	④ ----- ----- ----- <u>다음 각 호의 구분</u> ----- -----.
<u><신 설></u>	1. 운전경력조회 회신서 : 「도 로교통법 시행규칙」 <u>별지 제 144호의3서식</u>
<u><신 설></u>	2.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u>별지 제1호의6서식</u>